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기 상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기상산업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27호, 2024. 2. 6. 공포, 2025. 2. 7. 시행)됨에 따라,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을 삭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기상예보사·기상감정사 면허의 반납 규정을 신설하고 면허 취소·정지 등 면허증 반납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) ①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기후 빅데이터, 기상기후데이터 융합·분석·활용 등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를 5과목 이상 개설할 수 있거나 개설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(이하 “특성화대학원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.

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
2.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

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면허의 반납) ①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.

1. 면허가 취소된 때

2.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

②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면허를 자진해서 기상청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반납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려는 면허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기상기후데이터 융합 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) ①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기후 빅데이터, 기상기후데이터 융합·분석·활용 등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를 5과목 이상 개설할 수 있거나 개설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(이하 “특성화대학원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.</u> <u>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</u> <u>2.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</u>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원의</u>

제11조(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) 법 제17조제5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(생략)
 2.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출판·전시·홍보
 3.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·연구
 4.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양성
 5. 생활·보건·산업 등 분야별로 특화된 기상정보의 생산·관리 및 운영
 6. 기상기술 관련 해외 컨설팅 등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지원
 - 7.·8. (생략)
 9.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
- <신설>

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(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- 2.·3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

<삭제>

제16조의2(면허의 반납) ①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

부터 1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
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.

1. 면허가 취소된 때

2.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

②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
허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
에 따라 해당 면허를 자진해서
기상청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.
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
면허증 반납 신고서를 작성하여
반납하려는 면허증과 함께 제출
해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7448